

[별표 19] <개정 2007.9.14>

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이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를 제외한다)	신규종사후 6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 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때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에 한한다)	
	(4)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에 한한다) 및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	
	(5) 온수보일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시공자양	

	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6) 액화석유가스운반책임자	
나. 특별교육	(1)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신규종사시 1회
	(2)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 운전자 및 액화석유가스배달원	
	(3)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충전원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5) 가스시설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6)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7) 온수보일러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8)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9) 폴리에틸렌관융착원이 되고자 하는 자	
비 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공사가 정한다. 2.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자가 동목(2)·동목(6)·나목(2) 및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가목(3)의 교육을 받은 자가 동목(4)·동목(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목(4)의 교육을 받은 자가 동목(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5)의 교육을 받은 자는 동목(6) 및 동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목(6)의 교육을 받은 자는 동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중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의 전문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		

다.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3) 내지 (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2)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 가목(3)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6)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 다목(5)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가 나목(2)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6)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9)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 또는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정기안전점검원·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나목(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